bakertilly 우리회계법인 www.bakertilly-woori.co.kr
(우06174)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86길 17 (대치동, 육인빌딩)
전화 : (02) 565-1631
팩스 : (02) 565-1644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학교법인 광운학원

이사회 귀중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

우리는 별첨된 학교법인 광운학원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동 재무제표는 학교법인 광운학원의 일반업무회계 및 법인이 설립한 광운대학교 교비회계의 2026년 2월 28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자금계산서 및 운영계산서와 합산자금계산서 및 합산운영계산서, 2026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및 합산재무상태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수익사업회계의 2026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 회계정책에 대한 요약과 그 밖의 설명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학교법인 및 설치학교 재무제표는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수익사업의 재무제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수행한 감사를 근거로 해당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회계감사기준 및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 및 유의사항은 우리가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의 금액과 공시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절차의 수행을 포

함합니다. 절차의 선택은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에 대한 평가 등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인은 이러한 위험을 평가할 때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의 재무제표 작성 및 공정한 표시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고려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또한 재무제표의 전반적 표시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감사의견

우리의 의견으로는 학교법인 광운학원의 일반업무회계 및 법인이 설립한 광운대학교 교비회계의 재무제표 및 합산재무제표는 2026년 2월 28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자금수지 및 재무성과와 2026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또한 수익사업회계의 재무제표는 2026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준하여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

학교법인 광운학원의 2025년 2월 28일로 종료된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는 타감사인이 감사하였으며, 이 감사인의 2025년 4월 18일자 감사보고서에는 적정의견이 표명되었습니다.

일반업무회계 및 교비회계 자금계산서와 합산자금계산서의 예산액은 감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기타법규의 요구 사항에 대한 보고

우리는 별첨된 학교법인 광운학원의 법규 위반 및 부정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기타법규의 요구 사항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학교법인 및 설치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 사립학교법, 대학설립운영규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건전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를 방지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법규 위반 및 부정 사항을 확인하고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회계감사기준 및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에 따라 법규 위반 및 부정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기준 및 유의사항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금액과 공시 사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규 위반 및 부정 사항이 없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법규 위반 및 부정 사항과 관련하여 학교법인의 경영진에 대한 질의, 관련 인허가기관이나 규제기관과의 왕복문서 검사, 내부감사인 면담 및 감사보고서의 열람에 의하여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확인 의견

우리의 확인결과 법규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회계법인
대표이사 공인회계사 김 호 준

2026년 4월 30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26년 4월 30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첨부된 학교법인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첨부) 재무제표 감사 외 확인사항

(첨부)

재무제표 감사 외 확인사항
(기타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첨부된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감사 외 확인사항 집계표는 교육부 고시 제2026-4호(2026. 2. 24)「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제7조 제1항의 요구에 따라 외부 감사인이 재무제표 감사 외에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법규 위반 및 부정 사항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첨부하는 것입니다.

재무제표 외 확인사항 집계표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별지 제1호 서식]

회계연도	2025.03.01~2026.02.28	학교법인명	학교법인 광운학원	학교명	광운대학교

확인항목	위반여부		
	법인이 속하는 회계		학교에 속하는회계
	일반업무회계	수익사업회계	교비회계
1. 관할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 담보제공 또는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를 하였는지 여부	없음	없음	없음
2. 교비회계 수입 또는 지출 처리 시 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비회계에 세입되어야 할 자금을 다른 회계에서 세입처리하였는지 여부 나. 교비회계의 자금을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세출 범위 외의 용도로 지출하였는지 여부	없음	없음	없음
3. 재산 취득 시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없음	없음	없음
4. 사학기관이 결산 상 보유한 계좌 내역과 금융기관을 통해 조회한 계좌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없음	없음	없음
5. 이월금 구분(사고・명시・계속비・기타이월)이 적정한지 여부	없음	없음	없음
6. 공사・제조・구매・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이 수의계약인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없음	없음	없음
7.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의 적립이 해당연도 건물 감가상각비 범위 안에서 건축적립금 목적으로 적립하는지 여부	없음	없음	없음
8. 적립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지 여부	없음	없음	없음

9. 등록금 선수금을 선집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없음	없음	없음
10. 그 밖에 외부감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	없음	없음	없음

재무제표 외 확인사항 세부 내역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별지 제2호 서식]

회계연도	2025.03.01~2026.02.28	학교법인명	학교법인 광운학원	학교명	광운대학교

확인사항	위반내용	관련 법령	위반 금액 (단위:천원)
1. 관할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 담보제공 또는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를 하였는지 여부	없음	사립학교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2. 교비회계 수입 또는 지출 처리 시 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비회계에 세입되어야 할 자금을 다른 회계에서 세입처리하였는지 여부 나. 교비회계의 자금을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세출 범위 외의 용도로 지출하였는지 여부	없음	사립학교법 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3. 재산 취득 시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없음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4조	
4. 사학기관이 결산 상 보유한 계좌 내역과 금융기관을 통해 조회한 계좌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없음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5조	
5. 이월금 구분(사고・명시・계속비・기타이월)이 적정한지 여부	없음	사립학교법 제32조의4,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22조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1조	
6. 공사・제조・구매・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이 수의계약인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없음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	
7.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의 적립이 해당연도 건물 감가상각비 범위 안에서 건축적립금 목적으로 적립하는지 여부	없음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제1항	
8. 적립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지 여부	없음	사립학교법제32조의2제3항	
9. 등록금 선수금을 선집행한 사실이 있	없음	사학기관 재무・	

는지 여부		회계 규칙 제20조	
10. 그 밖에 외부감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	없음	-	
	(0) 건		